

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2. 9. 2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2. 8. 19.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: 2022. 8. 22.

다. 상정일자: 제257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(2022.8.30.)

상정, 심사, 보류

제257회 임시회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(2022.9.2.)
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 【제안설명자: 총무과장 최종익】

가. 제안이유

민선8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직운영을 위한 현재 규모의 정원 내에서 효율적으로 인력을 재배치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법조문 개정(안 제1조)
- 조례 제1415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부칙 제2조 개정
-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마포1번가연구단의 존속기한으로 하는 부칙 개정
- 본청 일반직 5급 △1, 일반직 6급 이하 △2
- 현재 규모의 정원 내에서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정원 증원 추진

- 본청 일반직 5급 +1(기구개편), 일반직 6급 이하 +2
(현안사업 추진 및 기준인건비 배정인력)
- 총 정원 변동 없음

3. 검토보고(전문위원 유준상)

- 본 조례안은 민선8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직운영을 위한 현재 규모의 정원 내에서 효율적으로 인력을 재배치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 「지방자치법」이 2022. 1. 13. 전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 상 인용 법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, 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12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25조”로, “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”을 “제3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”으로 변경하고
- 주요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부칙에 명시한 제2조 중 “한시정원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”를 “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마포1번가연구단의 존속기한으로 한다”로 변경하는 내용임.
- 검토의견으로는
본 조례안은 마포1번가 한시기구 존속기한 정비를 위한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일부개정에 따라 마포1번가 한시정원 5급 1명, 6급 이하 2명을 감한 인원을 일반직으로 재배치하여 총정원은 1,448 명 변동 사항은 없음.
- 다만, 이번 행정기구개편에 따른 정원 변경내용은 변동이 없으나 육아휴직 등으로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하여 직원들 업무가 가중된 점을 파악하여 행정안전부가 인력개편에 따른 용역을 시행중인 점을 감안하여 지

자체 의견수렴시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현실성 있는 마포구 정원배정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회의 인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집행부와 의회의 상호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5. 토론요지: 없음
6. 심사결과: 수정가결(수정안 불임)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8. 기타: 없음

※ [별표 1] 《일반직공무원 직급별 비율변경내용》 - 변동 없음

구분	4급 이상	5급	6급	7급	8급	9급	전문경력관
<현행> 비율	(1)% 이내	(5)% 이내	(22)% 이내	(33)% 이내	(33)% 이내	(5)% 이상	(1)% 이내
<개정> 비율	<현행과 같음>						

※ [별표 2] 《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변경내용》 - 변동 없음

기관별 직급별	현행						개정						
	총계	본청	구의회 사무국	보건소	사업소	동	총계	본청	구의회 사무국	보건소	사업소	동	
총계	1,448	1,448						<현행과 동일>					
일반직계	1,437	1,437											
3급	1	1											
4급	8	6	1	1									
5급	63	36	1	9	1	16							
6급 이하계	1,364	1,364											
전문경력관계	1	1											

※ [별표 3] 관계 법령

「지방자치법」

제125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
제30조(정원의 규정)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1. 집행기관의 정원(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)
2. 삭제 <2020.3.10>
3.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
4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
5.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

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[「지방전문경력관 규정」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(이하 "지방전문경력관"이라 한다)의 정원을 포함한다]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시·도의 5급 이하(시·군·구는 6급 이하)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
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(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「지방전문경력관 규정」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)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. 다만,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.

⑤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의안 번호	22-67관련
----------	---------

발의년월일 : 2022. 9. .

발 의 자 : 신중갑

1. 수정이유

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의 부칙과 맞춰 변경

2. 수정 주요내용

부칙 중 “공포한 날”을 “2022년 10월 7일”로 한다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
수정한다.

안 부칙 중 “공포한 날”을 “2022년 10월 7일”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12조 및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부칙 <조례 제1415호, 2021.9.30.></p> <p>제2조(한시정원) 일반직 정원 중 본청 소속 5급 1명과 6급 이하 2명의 <u>한시정원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.</u></p> <p><신 설>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125조 ----- ----- ----- 제3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----- -----.</p> <p>부칙 <조례 제1415호, 2021.9.30.></p> <p>제2조(한시정원) 일반직 정원 중 본청 소속 5급 1명과 6급 이하 2명의 <u>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마포1번가 연구단의 존속기한으로 한다.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부 칙</u></p> <p><u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u></p>	<p>제1조(목적)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부칙 <조례 제1415호, 2021.9.30.></p> <p>제2조(한시정원) (개정안과 같음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부 칙</u></p> <p><u>이 조례는 2022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.</u></p>